

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(제4차 교육위원회)
2024. 11. 26.(화) 10:00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이정범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4년 11월 14일
- 회부일자: 2024년 11월 14일

3. 제안 이유

-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에 따라 특별 휴가 기간 변경
-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양육 휴가 신설
-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(5년 이내) 공직 이탈·방지 및 자기계발, 재충전을 위한 새내기 도약 휴가 신설

4. 주요내용

- 가. 공직자 행동을 관련 조항 삭제(안 제5조)
- 나. 근검절약 관련 조항 삭제 및 휴가 기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 관련 조항 삭제(안 제7조)
- 다. 해직된 공무원의 인수인계를 위한 근무 관련 조항 삭제(안 제11조)
- 라. 재직기간 기준 확대(안 제14조)

마. 특별 휴가 신설(안 제16조)

바.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 일수 확대(별표4)

사. 경조사별 휴가 일수 확대(별표5)

5. 검토 의견

가. 조례 제안 이유 검토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사항과 공무원노동조합과¹⁾²⁾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것임
- 특히 최근 5년 이내의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사례 증가, 양육 부담에 따른 저출산 추세와 도내 지자체 및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별 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을 충분하다고 판단됨

나. 주요 내용

- 상위법령 제·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
 - 안 제11조는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12조와 중복되어 해직 공무원의 인수인계를 위한 근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
 - 안 제14조는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 제1항과 중복되는 별표4 내용 중 2.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를 삭제하고, 연가가산 대상 민간경력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임
 - 안 제15조 2는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4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간 외 근무시간 연가 전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임

1) 2023년 충북교육청노동조합 노사협의회,

- 20. 충청북도교육감은 학교기관 근무자의 자기계발휴가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.

2) 202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교육청지부 제6회 정책협의회

- 3. 충청북도교육감은 학교, 기관 근무자의 자기계발휴가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.

- 안 제16조의 재해구호휴가 관련 조항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 개정 사항과 중복되고, 선거 업무 및 투·개표 사무종사자에 대한 휴무 관련 조항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4조의3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임
- 안 제17조는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6조 제2항과 중복되는 ‘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.’를 삭제하는 것임
- 별표5는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 제2항의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경조사 휴가 문구에 ‘한꺼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’을 추가하고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임
- 위의 조항들은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, 조례의 간결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라 사료됨

○ 특별 휴가 신설·확대에 관한 사항

- 안 제16조 제7항은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자기계발 휴가에 대하여 ‘학교의 재량휴업일, 개교기념일, 방학 등 휴업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’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자기계발휴가 사용기간 범위를 확대한 것이며, 기관 및 학교 근무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임
- 안 제16조 제9항은 부부 공무원 합산,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 중 두 자녀 이하의 공무원에게 연간 7일, 세 자녀 이상 공무원에게 연간 12일의 특별 휴가를 제공하고, 연령 제한 없이 장애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2일의 특별 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인 저출생과 자녀 양육

- 시간 등에 대하여 문제 등에 대하여 일부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
- 특히 세 자녀 이상 공무원과 장애 자녀 공무원의 자녀 양육 휴가 일수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클 것으로 사료됨
 - 안 제16조 제10항은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연간 2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2024.03.26. 행정안전부의 <정부차원의 사기진작 방안 발표>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내 자치 단체 및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별도의 문제가 없으며,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

<저연차 처우개선을 위해 지자체별 새내기 도약휴가 도입(특별휴가)>

구 분	시행일	대 상	내 용	구 분	시행일	대 상	내 용
충청북도	'24. 9.27.	5년 미만	연간 2일(총10일)	경기도	'24. 7. 18.	1년이상 5년미만	총 3일
청주시	'24. 4. 5.	1년이상 5년미만	총 3일	경기교육청	'24. 7. 18.	"	총 3일
충청남도	'23. 7. 10.	"	총 3일	인천교육청	'24. 7. 15.	"	총 3일

※ 울산교육청 도입 검토 중

○ 기타 일부 미비 사항에 대한 정비 사항

- 안 제5조는 ‘공무원은 별표 3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.’를 삭제하는 것과 안 제7조는 근검·절약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등에 포괄적 관련 규정이 담겨 있고, 내용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
- 기타 안 제4조, 안 제8조, 안 제12조, 안 제13조, 안 제15조, 안 제16조 제3항 및 제6항은 관계 법령명의 변경, 문구의 명확화 등을 위하여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성 및 명확성을 높일 것으로 보임